

**제품 설명**

**Moplen HP5038**은 분자량분포도를 조절하여 스펀본드 부직포 제조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제품으로 기저귀 및 위생용품용 장섬유, 농업용, 쇼핑백, 의류용커버 및 물수건 등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Moplen HP5038**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식품포장 규격인 21 CFR 177.1520 규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성** 높은 섬유강도/ 우수한 방사성/ 내 변색성/ 낮은 fume

**시장** Textile

**주요용도** 기저귀 및 위생용품/ 농업용/ 쇼핑백/ 의류용 커버/ 물수건

**ASTM Data**

| 물성                              | 측정치   | 단위       | 측정방법        |
|---------------------------------|-------|----------|-------------|
| 융융지수 (230°C, 2.16kg)            | 34    | g/10 min | ASTM D1238L |
| 밀도                              | 0.9   | g/cm3    | ASTM D1505  |
| 굴곡탄성률                           | 14000 | kg/cm2   | ASTM D790   |
| 인장강도(항복점)                       | 350   | kg/cm2   | ASTM D638   |
| 신율(항복점)                         | 9     | %        | ASTM D638   |
| 아이조드 충격강도 (23°C)                | 3     | kgfcm/cm | ASTM D256   |
| 록크웰경도 (R-Scale)                 | 103   | R-Scale  | ASTM D785   |
| 연화점                             | 152   | °C       | ASTM D1525  |
| 열변형온도 (0.46 N/mm <sup>2</sup> ) | 102   | °C       | ASTM D648   |

1)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제품 사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2) 울산피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3)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울산피피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판매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체의 보증 포함)도 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들)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i. 미국 식품의약국 클래스 3,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4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3 의료 기기;
- ii. 영구적 체내 이식을 수반하는 용도;
- iii.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용도; 또는
- iv. 납, 석면 또는 메틸삼차부틸에테르 (MTBE) 관련 적용

사용자는 본 제품을 위 범주에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5)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각각의 구체적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범주에서 본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i. 미국 식품의약국 클래스 1,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1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1 의료 기기;
- ii. 미국 식품의약국 클래스 2,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2 의료 기기;
- iii. 전술한 의료 기기 중 하나의 일부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필름, 걸포장 및/또는 제품 포장재;
- iv. 활성 제약성분에 직접 닿는 포장재 및/또는 흡입, 주사, 정맥·코·안과적(눈)·소화기 혹은 국소(피부) 투여를 위한 조제 형태;
- v. 담배 관련 제품 및 사용;
- vi. 전자 담배 및 유사 기기; 또는
- vii. 원자로의 일부 또는 부품으로 간주되는 압력 파이프 또는 설비

\*미국 식품의약국,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그에 준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 분류를 포함합니다.

6) 본건 책임부인고지문의 목적상 "판매자"는 울산피피 및 울산피피가 본 고지문이 적용되는 제품 판매를 위해 선임한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Trademarks**

제품명에 언급된 상표는 라이온델바젤이 소유하고 사용하며, 라이센스 하에 울산피피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